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85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황정아 · 민병덕 · 권향엽
박지원 · 김남근 · 김 윤
윤건영 · 장철민 · 조승래
양부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제2항 중 “발생하면 그”를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을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 하고, 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5(침해사고의 신고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피해규모와 과징효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6.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7.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9.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10.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침해사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의4제5호의2 중 “제48조의6제3항에”를 “제48조의7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3 중 “제48조의6제5항에”를 “제48조의7제5항에”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생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 -----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발생 여부 및 원인을-----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④ -----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 -----

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

⑤ -----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

-----.

⑥ -----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

-----소속-----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

따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
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
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
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⑧ (생략)

<신설>

-----.

⑦ -----

-----침해사
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이-----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5(침해사고의 신고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
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하는 경우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
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
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
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
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6.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
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

· 위조·변조·훼손의 규모

7.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9.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10.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침해사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채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u>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u>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생략)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현행 제48조의5와 같음)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생략)	제48조의7(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현행 제48조의6과 같음)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의4(청문)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2. 제48조의7제3항에----- ----- --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의3. 제48조의7제5항에-----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u> <u>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u> <u>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8조</u> <u>의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u> <u>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u> <u>과할 수 없다.</u>
--------------------	---